

「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노동 현안에 대한 전문적·세부적 논의를 위해 운영 중인 노사민정 협의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실무협의회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 및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정비(안 제11조, 제12조, 제15조)
-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4조)
-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5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~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노사민정협의회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체계성을 높이고,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심도깊은 논의와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향후 분과위원회 운영 시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검토, 의견조정, 보조 및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해야 할 전문적인 사안의 기준 마련 등 관련 부서에서는 조직 운영을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임.